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11
----------	-------

발의연월일 : 2026. 8. 4.

발 의 자 : 조은희 · 김용태 · 이성권
신성범 · 강명구 · 김재섭
이만희 · 박상웅 · 박정하
한동훈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 예산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참여 확대, 성별에 따른 효과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 있으나, 학자금 및 주거 문제 등으로 사회진출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 등 청년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청년 친화성을 제고하고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결산서 제출시 첨부하는 서류에 청년
인지 결산서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신설).
- 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청년의 권익 증진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청년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
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20405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06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07호) 및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청년인지 결산서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2(청년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청년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청년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인지 결산서의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4호의 2 개정규정에 따른 청년인지 결산서의 첨부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

정에 따른 청년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은 2028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u>4의2. 청년인지 결산서</u>
5. ~ 12. (생략)	5. ~ 1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18조의2(청년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청년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u>
	<u>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청년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u>

으로 정한다.